

법인카드사용분 회계처리 누락시

Q 2년전 법인카드 사용후 그해 회계처리시 누락되어 지금까지 누락상태로 있습니다.
 사용금액은 이미 결재되어 인출된 상태입니다.
 누락금액에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소급해서 "비용/미지급비용" 회계처리하면 되는지요?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요?

A 전기이전의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품권 결제관련 문의

Q 저희 회사에서 상품권 판매를 하고있는데 상품권은 현재 2종류 입니다.
 1) 금액 상품권 (5만원 10만원 30만원)
 2) 호텔 이용 상품권 (식음료상품권 / 객실 상품권 / 조식+객실 상품권)
 고객이 상품권을 구매할때 상품권구매 전용 단말기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고 있는데, 상품권 구매 전용 단말기가 아닌 일반 단말기에서 법인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요?

A 상품권 판매에 따라 결제와 관련된 문제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닌데, 상품권 구매 전용단말기가 아닌 일반 단말기에서 상품권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세무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출장비 관련 문의

Q 1. 출장비는 회사의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 출장비 정산 시 여비규정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을 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연구비 등 다른 회계계정(또는 예산)으로 처리해도 괜찮은지?
 2. 이 경우 여비규정에 다른 회계계정(또는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3. 현재 출장비 실비 정산하고 있어서 법정지출빙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지출 증빙 없이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 교통비, 식비, 일비를 정액으로 지급하고 지출결의서 등에 수령인의 확인을 받아 처리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건당 3만원 초과하는 경우(예를 들면 숙박비가 10만원)에도 법정지출증빙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A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는 실비변상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의 비용(여비)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을 입수하여 처리하면 되며, 회사의 여비지급에 따라 별도의 증빙없이 지급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내에서 실비변상적 비과세급여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답변드릴수 없는 내용이며 귀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 서이46013-10649, 2002.03.27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법정보험금의 범위

Q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하는 법정보험의 보험금의 경우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증법 46조 8호, 동법 시행령 35조 6항)

이때, 당해 보험이 보장성 보험만 해당하는 것인지, 저축성 보험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문의드립니다.

A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저축성보험 및 보장성보험의 구분을 두지 않았으므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모든 보험금이면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